

2021학년도

학교생활 · 인권 길라잡이

2021. 08. 13



청담고등학교

주) 451-800 경기도 평택시 웅성읍 남산리 96번지

T.(031)691-9100, F.(031)691-8096

<http://www.cheongdam.hs.kr>

차 례

◎ 본교 교육목표	1
◎ 학생생활안전부 운영 계획	2
◎ 학교생활 · 인권 규정	5
◎ 학생 인성 UP 금연 UP 프로그램 운영 계획	50
◎ 나 · 침 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계획	52
◎ 교권보호 운영 계획	56
◎ 응급환자 관리 및 감염병 예방 관리	67
◎ Wee Class 운영 계획	74

교육목표



【건학이념】

- 자비무적 - 넓고 깊은 사랑을 베푸는 봉사과 희생
- 정진불퇴 - 이상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 지혜광명 - 슬기롭고 맑은 마음의 자각

【교훈】

- 자비(慈悲)
- 정진(精進)
- 지혜(智慧)

【학교장 교육 경영 방침】

인성 · 직업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
- 학생 중심 창의융합교육 구현
- 행복한 배움과 분위기 조성
-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가치(같이) 교육 실천



【본교 교육 목표】

인성 인재

불교정신에
입각한
비른 인성 인재
육성

직업 인재

준비된
창의융합
직업 인재
육성

미래 인재

참행복
미래 인재
육성

학생생활안전부 운영 계획

【비전】

바른 마음과 몸가짐으로 모범적인 학생상을 정립하여
가·머·실·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

【목표】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 정립”

바른 마음

바른 몸가짐

바른 행동

바른 말

안전하고, 신나고, 즐겁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이 충만한 학교생활
【중점 추진 사항】

바른마음	바른 몸가짐	바른 행동	바른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께 효도하기 •선생님 존경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칙 준수하기 •교복 단정히 착용하기 •실외화 착용 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잘하기 •등·하교 시간 준수하기 •수업에 적극 참여하기 •질서 지키기 •휴대폰 반납 잘하기 •금연을 생활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운 말 쓰기 •발표 잘하기 •서로 칭찬하기

-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적인 규범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향상시킨다.
-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지닌 건강인을 기른다.
-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 존중, 배려,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며 건전한 자아의식 확립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 재난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2. 기본 방침

- 도덕이론이나 원리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천적인 태도변화에 중점을 둔다.
- 가정, 사회 그리고 학교의 연계 지도로 반복적인 생활습관지도를 통한 바른 생활을 습관화시킨다.
-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지도 및 특별활동 면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
- 도덕성 교육 강화로 인간성 회복과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킨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실천으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 상담활동의 활성화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력을 신장시킨다.
- 생명존중 교육 및 인권교육 확대로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를 정착시킨다.
-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시킨다.
- 학교 및 학교 밖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고취시킨다.
- 교육적 필요나 시대적 요청이 있을 때 기 수립된 세부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세부 추진 계획

추진사항	실천계획	대상	목표	시기	담당교사
기본질서교육	-바른 생활 교육 -생활수칙 실천교육 -교육과정 운영 중 상시 교육 실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 및 관리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및 운영	전교생	연중	연중	부서 전교사
안전교육	-7대 안전교육 운영 -나침반, 안전점검의 날 운영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전교생 학부모 교직원	연중 연2회	3~2월 3~2월 5월,12월	홍대정 선생님
학생생활교육 (선도)	-학생생활교육(선도)위원회 운영(간사) -회복적 생활교육 계획 수립 운영(각 과부 연계)	전교생	연중	연중	김희선 선생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폭력예방교육실시 -친구사랑주간 및 친구사랑의 날 운영 -또래상담 및 사제동행 농구대회 운영	전교생 학부모	연중	3~2월 3~2월 3~2월 7월	박기만 선생님
금연교육	-흡연규정 및 금연교육 운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과태료부과	전교생	연중	3~2월 5월~10 월	부서 전교사

현장체험학습	-학생체험학습 및 수련회 활동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연간 20일)	전교생	연중	연중	홍대정 선생님
자살예방교육	-학생자살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교육공동체구성원 자살 예방 연수 및 교육 별도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 운영	전교생 학부모 교직원	연중	3~2월 3월,9월	박기만 선생님
민주시민교육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 민주시민 자질 함양 교육 실시	전교생	연2회	연중	이슬기 선생님
인성교육	-모범학생 표창 -스승의날 감사 편지쓰기 -독후감상문, 봉사활동 표창 -생활문쓰기를 통한 인성교육강화	전교생	연2회 연1회 연1회 연중	연중	이슬기 선생님
자치활동운영	-학생자치활동 기구 구성 및 운영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및 운영	2~3 학년	연중	3월, 10월 3~2월	이슬기 선생님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약속단계 -약속준수단계 -교육적선도조치단계	전교생	연중	연중	부서 전교사
보건교육	-학생보건교육 -성교육	전교생	연2회 연2회 연중	연중	서수진 선생님
상담업무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상담주간 운영 -위클래스 운영	전교생 학부모	연2회 연2회 연중	연중	박연서 선생님

4. 기대 효과

- 기본적인 예절 및 도덕적인 규범의 자율적인 실천의지 향상
- 자신의 흥미, 적성,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며 건전한 사회인
과 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 포부와 기초적 소양 함양
- 이웃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동하는 생활 태도 기르기
- 민주적인 인간관계 수립 및 집단 생활관 정립, 개인의 이해 및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 신장
- 배려와 나눔의 실천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신장
-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함양

2021학년도 청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이 규정은 청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8조, 제31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 국무총리훈령 제 545호 제3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생이 사회 기초집단의 하나로서 학생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이 규정은 학교생활과 인권에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학생의 인권' 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서 할 수 있다.

제5조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및 권리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 (사생활 자유의 권리)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들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제17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자치회,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키,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20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학생 생활·인권 위원회의 설치) 제2조 목적 및 제3조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인권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적용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학교 규칙 기재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 조례 4085호),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활인권 교육 기본 계획」,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 하여 학생 생활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0조 (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1조 (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날 경우에는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동아리가 결정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생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33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되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① 여가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여가시간에는 담당 교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실(음악실, 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③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한다.

제34조1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담당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실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② 외출이나 조퇴를 하고 싶을 때
- ③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④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⑦ 교내에서 학생들의 회의 모임이나 단체활동을 할 때
- ⑧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제34조의2 (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하지 않은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35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절 용의 복장

제36조(목적) 학생으로 하여금 용의 복장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청담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학풍을 진작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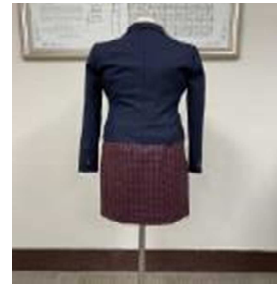
제37조(교복) 교복은 계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 및 색상, 디자인 등의 것을 따른다.

- ① 교복은 계절에 따라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부사관과의 경우 훈련복(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된다. 교복 착용의 기준 및 예시는 <표 1>과 같다.

- 바지와 치마: 학교에서 규정한 바지와 치마를 착용한다.
- 셔츠와 블라우스: 학교에서 규정한 셔츠와 블라우스를 착용한다.
- 조끼: 명찰을 패용한 감색, 회색 조끼는 허용한다.
- 가디건: 지정된 가디건을 착용한다.
- 코트: 동절기에는 코트나 점퍼의 착용을 허용한다.
- 폴라: 동절기에는 셔츠나 블라우스 대신 목이 긴 폴라형 셔츠 착용도 가능하다.

<표 1> 교복 착용 기준 및 예시

동복(남학생)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동복(여학생)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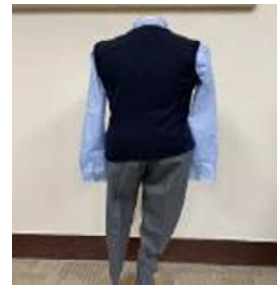


춘추복(남학생)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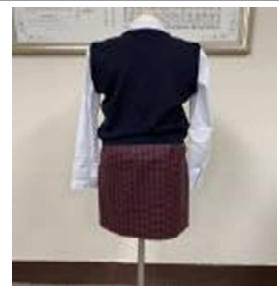


춘추복(여학생)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부서관 동복(공용)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부서관 춘추복(공용)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하복(남학생)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하복(여학생)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부서관 하복(공용)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 ③ 생활복은 하복착용기간 중에 희망하는 전 교생에 한해서 착용한다.
- ㉠ 생활복은 하복을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다.
 - ㉡ 생활복을 착용할 때에도 반드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 ㉢ 생활복은 체육복으로 착용할 수 없다.
- ④ 교복을 착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학교에서는 늘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 학교장 허가 없이 기타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경우 교복은 즉시 수선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 ㉢ 공식적인 교외 행사에는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명찰) 학생 명찰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증은 상시 휴대한다.
- ② 생활복, 체육복에도 반드시 패용한다.

제39조 (두발) 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두발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아야 한다

- ① 염색은 새치 염색만 허용한다.
- ② 파마는 매직이나 스트레이트 파마 만 허용한다.
- ③ 왁스 젤 무스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40조 (잡화)

- ①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교과서를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으로 한다.

② 학생용 신발은 실내화 및 실외화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

- 실외화 - 남학생은 학생용 운동화 및 단화를 신고, 여학생은 단정한 모양의 학생용 구두와 학생용 운동화를 신는다.(슬리퍼형 신발X)
 - 실내화 - 교실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만 지참하여 신도록 한다. (단 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실습실에서는 지정된 실내화를 반드시 착용)
- ③ 성인용 구두, 부츠, 굽 높은 신발은 착용할 수 없다.(단, 비나 눈이 올 경우 레인 부츠는 착용이 가능하다.)
- ④ 교복을 입을 때는 반드시 양말이나 스타킹(단, 성인용 투명한 스타킹의 착용은 금지한다.) 또는 검정 레깅스 (동절기)를 착용해야한다.
- ⑤ 귀고리는 흔들리지 않고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다량의 귀고리 사용은 금함)

제41조 (기타) 기타 학교생활에 있어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써클렌즈나 칼라렌즈의 착용을 금지한다 단 시력 교정의 투명한 렌즈의 착용은 허용한다.
- ② 신체 부위에 화장 (문신)을 하거나 구멍을 내어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 (피어싱)은 금지한다.
- ③ 손·발톱 보호용 투명 매니큐어 외에 다른 색상이나 용도의 매니큐어를 바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④ 학생신분에 맞는 기초 화장(피부톤과 비슷한 색의 썬크림, 비비제품, 파우더 등의 기초피부화장, 틴트, 아이브로우)은 허용하나 진한 색조화장(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볼터치 등)을 금지한다.
- ⑤ 위해성도구(공업용 공구, 맥가이버칼 등) 및 도박게임물품 (화투, 카드, 마작 등), 고데기, 드라이어기의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한다.
- ⑥ 만약 문신이 있는 학생은 봉대 및 테이프를 이용하여 문신을 가린다.
- ⑦ 위 사항 이외에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 (소지품 검사) 학생 흡연 및 학생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따른다.

- ① 학생은 음란물 (음란 미디어, 음란 서적 등), 흡연 관련물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등), 흉기류 (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음주, 흡연, 부정행위를 한 경우('신설' 흡연으로 적발되는 경우 6항의 사항을 따른다.)
 - ㉡ 절도(도난 사건) 및 금품 갈취, 괴롭힘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 ㉢ 도박 물품이나 위해성 도구,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 ㉣ 위의 사항의 징후가 보이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기구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 ③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하에 담임교사 또는 각 학과 생활 지도담당 교사, 학생생활안전부 교사의 주관으로 교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 교무실 상담실 등에서 실시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⑥ 흡연으로 1차 적발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지도를 받는다.(담임교사는 학과부 및 학생생활안전부에 통보)
 - ㉠ 흡연으로 적발되는 경우 흡연사실 확인서를 작성한다.
 - ㉡ 흡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학과부장 및 생활지도교사 입회하에 보건실에서 1차 흡연측정검사를 실시한다.
 - ㉢ 흡연측정을 거부할 경우 교장 또는 교감입회하에 2차 흡연측정을 실시한다.
 - ㉣ ㉠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흡연측정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흡연측정거부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3절 금연 규정

제43조 (흡연 학생) 다음 각 호의 경우 흡연학생으로 간주한다.

- ①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 ② 흡연을 하고 난 후 흡연 행위가 적발된 경우
- ③ 담배 또는 라이터(성냥포함)를 소지한 경우

④ 전자담배 사용 또는 소지한 경우

제44조 (흡연 학생 지도)

- ① 흡연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 ㉠ 1차: 금연지도 상담 및 학부모 상담(담임)
- ㉡ 2차: 금연지도 상담 및 학부모 상담(과부장)
- ㉢ 3차: 금연지도 상담 및 학부모 상담(학생생활안전부장)
- ㉣ 4차: 학부모 소환(교장면담), 사회봉사 3일
- ㉤ 5차: 학생자치법정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출석정지10일)
- ㉥ 6차: 퇴학
- ② 보건소 금연클리닉 또는 종합병원의 금연캠프 이수 시 연 1회에 한하여 1회 감면한다.
- ③ 모든 흡연 차수는 재학기간 누적으로 한다.
- ④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발급하는 선도교육증을 출석부에 첨부 후 참여한다.
- ⑤ 흡연(현장)으로 적발된 학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
- ⑥ 교실에서 흡연(전자담배포함)하는 학생은 퇴학 처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2020년 2월 24일 일부 개정

제2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45조 (목적) 학생 정보통신 사용에 대한 학교규칙 및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학력증진과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혁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사이버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47조 (정보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8조 (정보통신교육의 목적)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의 습관을 유도하고, 공공장소 및 단체생활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와 사용예절을 학생 스스로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 ① 남을 배려하여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을 스스로 자제한다.

- ② 함께 하는 명랑하고 건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③ 자제하는 습관과 절제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몸에 익혀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 ④ 공공장소 및 단체생활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자제와 사용예절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 ⑤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의 올바른 사용으로 정보통신 사회에서의 예의바르고 건전한 삶을 영위 하도록 한다.

제49조 (정보통신기기의 소지)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소지여부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정한다.

-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폰)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 중 소지 및 사용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휴대전화 사용' 이라 함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사진촬영, 게임, 영화, 음악 감상,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장난이나 놀이를 하는 행위 및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진동소음 및 착신신호음이 타인에게 들리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② 일과시간(수업시간 포함)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한 학교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아침 조례 시간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 제출한 휴대전화는 특별한 사유(교과담당 교사의 지도로 수업시간에 교육용으로 활용)를 제외하고 종례시간에 돌려 받는다.
- ③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이용: 꼭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나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고 그 앞에서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정규 수업 시간에는 각종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아이패드, 아이팟, 갤럭시탭, 갤럭시 플레이어, 전자사전, MP3, PMP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수업이나 교육적인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과담당교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⑤ 학부모-학생 간 긴급 연락 방법
 - 학부모의 긴급연락 방법: 학교전화 및 담임교사 전화를 이용한다.
 - 학생의 긴급연락 방법: 교사의 허락을 받고 교무실과 행정실 전화를 이용하거나 담임교사 전화를 이용한다.

제50조 (위반 내용 및 지도 방법)

- 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행위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단, 장기간 휴대전화의 보관은 금한다.)
 - ㉠ 1회 적발 시 교사는 당일 종례 시 까지 휴대전화를 수거한다.
 - ㉡ 2회 적발 시 교사는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다. 담임교사는 당일 종례 시까지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제5장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약속 단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 3회 적발 시 교사는 학과부의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제5장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약속준수 단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단, 휴대전화는 담임교사에게 건네 주며, 당일 종례시간까지 휴대전화를 보관한다.)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한다.
 - ㉠ 휴대전화 학교규칙 위반 후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 5회 이상 소지 및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5절 현장실습

제51조 (현장실습) 우리 학교 현장실습운영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6절 교외생활

제52조 (자퇴)

- ①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타 학교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 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 실적을 자퇴 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53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외출 시에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생의 신분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우범지역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③ 불필요하게 시내를 배회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행선지와 귀가시간을 밝힌다.
- ④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⑤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⑥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⑦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⑧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⑨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⑩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 ⑪ 일일차집 운영 등 불건전 영업 행위는 금지한다.
- ⑫ 방과 후 시간제 일(아르바이트)을 행할 시, 부모님과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⑬ 협박, 폭행, 절취, 갈취, 공공물파손,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⑭ 전교직원은 상시 교내·외 생활지도를 한다.

제54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④ 기타 보호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사항

제4장 학생자치회 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제55조 (명칭) 이회는 청담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이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56조 (목적) 이회는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청담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제58조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이회 활동에 참여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 ② 이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기구) 이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자치회를 둔다.

제60조 (지도기구)

- ① 이회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지도위원회는 이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활동에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 (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2조 (활동) 이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민주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특별활동
- ②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③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④ 학교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⑤ 학생 복지의 증진 및 각종의 봉사 활동
- ⑥ 학교 및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 ⑦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 활동

제63조 (효력정지)

- ①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② 이 회의 의결사항이 교칙에 위배 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64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1인, 부회장 2인,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성별 구분 없이 1인씩으로 구성한다.

제65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 자치 활동 전반의 기획 및 운영
- ② 학생회의 업무 집행
- ③ 예산 편성 및 결산
- ④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 결정
- ⑤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 ⑥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66조 (운영위원회 기구)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① 교학인성부: 본 회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건학이념 구현과 올바른 종교관 확립 및 부처님오신 날 행사 주관
- ② 건강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③ 생활자치부: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및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각종 캠페인 실시
- ④ 환경봉사부: 각종 봉사 활동, 학교내외의 환경미화, 학급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 ⑤ 독서부: 교내 도서관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⑥ 직업특성학부: 제반 검정업무 보조와 취업에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67조 (운영위원회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8조 (운영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부를 대표한다.
-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 (선출 및 자격)

-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본교 재학생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② 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③ 부장은 3학년 학생으로, 차장은 2학년 학생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 ㉠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타인을 잘 배려할 수 있는 학생

제70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3월부터 다음 학년도 2월까지로 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학생회장의 경우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대의원회

제71조 (대의원회 구성)

-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학과대표(과별1명), 학과부대표(과별1명), 학급의 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학년별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2조 (대의원회선출 및 자격)

- ① 대의원은 학급회에서 학급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정부 각 1명을 선출 한다.
- ② 대의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 ㉠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타인을 잘 배려할 수 있는 학생

제73조 (대의원회 임기)

- ① 대의원회의 임기는 당해 학년별로 한다.

제74조 (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학생회 예산, 결산의 심의
- ③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 안건의 토의
- ④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

제75조 (대의원회 회의) 대의원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할 수 있다.

- 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씩 소집한다.
-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일 3일전 까지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지도위원회

제76조 (지도위원회 구성)

- ① 지도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제77조 (지도위원회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도한다. (전 항의 지도는 사전지도와 사후지도를 포함한다.)

- ①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학생회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절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제78조 (예산)

- ① 본 회의 필요 경비는 학교운영 지원 체계에서 지원한다.
- ② 출납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교육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79조 (회계 연도)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0조 (예산 편성)

- ① 학생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편성한다.
- ②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회장이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③ 예산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제81조 (예산 지출)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학생자치회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82조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절 학생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83조 (선출 시기)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10월 ~ 11월중에 학생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실시한다.

제84조 (선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학생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회장·부회장을 선출한다.

제85조 (후보 자격)

- ① 회장은 2학년, 학과대표 2학년, 부대표 1학년 각 1명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 ② 담임교사와 재학생 10명 이상의 서면 추천을 받은 학생
- ③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 ④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타인을 잘 배려할 수 있는 학생

제86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이전에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학생회 담당교사가 위촉하여 10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단,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 1명을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96조 (공고)

- ① 개표 종료 직후 학생회 담당교사는 개표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즉시 공고한다.
- ② 공고 내용에는 총 유효표 수, 유효 득표수, 무효 득표수, 기권표수를 명시 하고 각 후보별 득표수, 득표율 및 득표 순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97조 (회장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 ①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중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을 득표한 자를 학생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 ② ①항의 경우 2/3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 ③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학교장의 결재가 난 때부터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7절 학급회

제98조 (목적) 학급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며, 합리적인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급우간의 우애와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9조 (구성) 학급회는 학급 학생으로 구성되고 담임교사는 고문이 된다.

제100조 (기구와 임무)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반장)

- ㉠ 학급을 대표한다.
- ㉡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 담임선생님을 도와 학급에 봉사한다.
- ㉣ 전한 교풍과 학급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② 부회장(부반장)

- ㉠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 담임선생님과 학급 회장을 도와 학급에 봉사한다.
- ㉢ 건전한 교풍과 학급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 ㉣ 회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취미별 모듬 구성 가능)

- ㉠ 학습 부장: 학급의 자율적 학습 분위기와 교과 학습준비 보조
- ㉡ 교학인성부장: 건학이념 구현과 교조유시 정신함양 활동
- ㉢ 건강체육부장: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경기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 환경봉사부장: 학급을 청결히 하여 명랑한 학급 분위기 조성
- ㉤ 직업특성화부장: 제반 검정업무 보조와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 독서 부장: 학급의 도서 관리 및 독후감 발표회 진행 및 독서관련 업무
- ㉦ 서기: 학급 회의록 및 학급일지 기록 관리
- ㉧ 회계: 학급에서 제반 예·결산의 업무 활동

④ 부원은 어느 한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하여야 한다.

⑤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 (학급회 구성) 학급회는 회장(반장) 1인, 부회장(부반장) 1-2인으로 하고, 각 부 부장 및 서기, 회계(남, 여 관계없이 1인)로 구성한다.

제102조 (학급회원 자격)

① 회장(반장) 및 부회장(부반장)

- ㉠ 품행이 단정하여 급우들의 추천을 받은 자
- ㉡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타인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자

② 부장, 서기, 회계: 담임교사와 학급회의의 조정을 거친 학급 자체의 기준에 의한다.

제103조 (학급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① 회장 및 부회장: 학급회의에서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한다.(담임교사는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 선거방법은 보통비밀평등직접 선거로 한다.
- ㉡ 회장· 부회장은 재적 과반수를 얻은 후보로 한다.
-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 ② 부장, 서기, 회계 : 담임교사와 급우의 추천에 의한다.

제104조 (학급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 ① 회장(반장) 및 부회장(부반장): 담임교사의 제청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부장, 서기, 회계: 학급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이 임명한다.

제105조 (학급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 ① 회장(반장) 및 부회장(부반장): 1년
- ② 부장, 서기, 회계: 1년
- ③ 학급회장(반장)이나 부회장(부반장) 중 결원,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급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이 그 교체를 학교장에 건의 할 수 있다.

제106조 (운영) 학급회 운영은 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07조 (학급회의 종류)

- ① 학급회 - 학급 학생 전원
- ② 운영위원회 -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서기 및 회계

제108조 (학급회 개최 주기) 학급회의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자율활동시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개최 할 수 있다.

제109조 (학급회의 순서) 학급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개회 선언
- ② 국민의례
- ③ 삼귀 의례
- ④ 의장 인사
- ⑤ 지난 주 생활 반성 및 각 부 보고 사항(회무, 회계 등)
- ⑥ 의안 채택(주헌 및 학급의안)
- ⑦ 실천 계획 수립
- ⑧ 건의 사항
- ⑨ 지도교사 조언
- ⑩ 교가 제창
- ⑪ 사홍서원
- ⑫ 폐회 선언

제110조 (안건 처리) 학급회의에서 결의된 주요 안건 및 건의 사항은 학급 대의원을 통하여 대의위원회에 건의하여 추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5장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11조 (운영방침)

- ① 회복적 생활교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② 평화롭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 ③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④ 학생은 교사의 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사의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프로그램 적용을 거부할 경우 상담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한 후, 학부모 상담, 교사협의를 통해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제112조 (프로그램 운영 방법)

- ① 회복적 생활교육은 3단계로 실시하며 1단계는 약속 단계, 2단계는 약속 준수 단계, 3단계는 교육적 선도 조치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담임교사 (또는 각 학과 생활지도교사, 학과 부장)는 1단계와 2단계의 필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선택 프로그램(○)은 학생의 행동특성과 정서적 성향 문제 행동의 원인을 고려하여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④ 1, 2단계를 통해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 협의 후 3단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 처분을 결정하고 추수지도를 실시한다.
- ⑤ 3단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여부는 학과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사전에 위원장(교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담임교사 또는 학과 생활지도 교사는 학과협의회요청서, 학생 자기변론서, 목격자확인서, 사실확인서, 학생사안 조사보고서, 등을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사는 학생이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또 다른 형태의 체벌(교육벌)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한 후 실시한다.
- ⑦ 담임교사 (또는 학과 생활지도 교사, 학과 부장)는 사안에 따라 학생이 동의할 경우 제5조(학생 사안별 적용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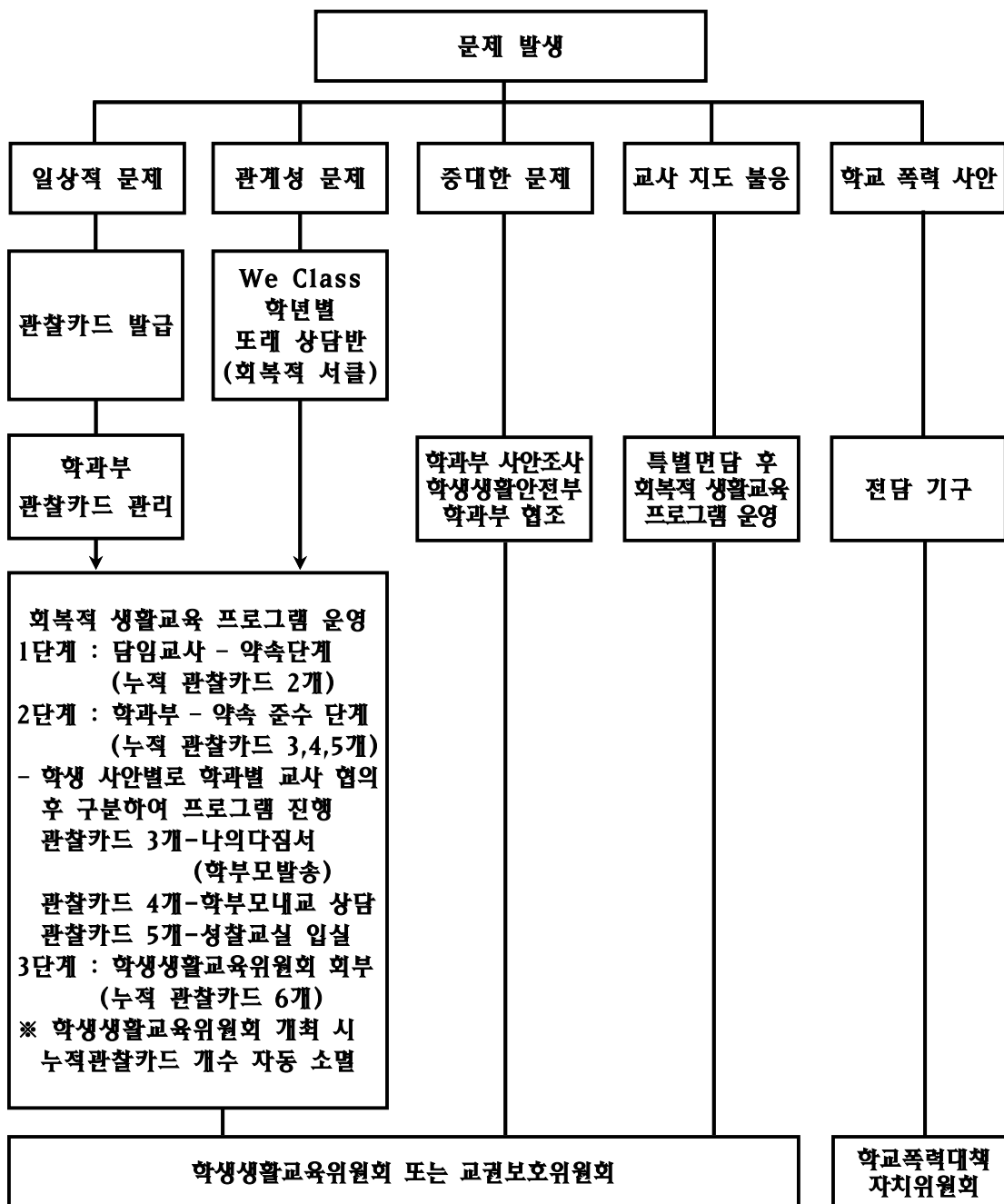
제113조(직무)

- ① 학생생활지도 및 프로그램은 전교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실시한다. 또한 중대한 학생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및 학과 생활지도교사는 학과부장 및 학생생활안전부장에게 사안의 발생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② 다음과 같이 직무의 역할을 구분한다.

- 담임교사 : 학급 생활 질서 운영, 1단계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약속단계 운영)
- 학과부 (학과부장 또는 학과 생활지도 담당교사) : 관찰카드 관리, 2단계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약속준수단계) 운영, 생활교육위원회 경고장 발급
- 상담교사 : 위기관리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또래상담반 운영

제114조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① 회복적 생활교육의 흐름



- **일상적 문제:** 수업 태도, 생활 태도(무단외출, 학교지정 등교시간 지각, 실내소란,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실내화 착용 등교 등), 용의복장, 소지품 등과 같은 일상적 문제
- **관계성 문제:** 친구, 교사와의 관계성 문제
- **중대한 문제:** 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3절 학생의 선도 **제146조(선도의 방법)** ④, ⑤항, **제149조(교권침해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문제
- **교사의 지도 불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문제
- **학교폭력사안:**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문제

② 주요 프로그램

㉠ 약속 단계(담임교사)

구분	방법
회복적 성찰하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문 작성
자기행동 이행계획 세우기	자신의 문제 행동에 일시, 장소, 대상, 파급효과, 문제 행동의 결과 등을 기술하고 행동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약속 준수 단계(학과부)

구분	프로그램명	방법	
성찰 중심 활동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편지쓰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미래 다짐에 대해 자신, 친구, 교사, 학부모에게 편지를 작성
		마음 일기 쓰기	마음가짐 점검표를 1주-2주 단위로 작성하고, 마음 일기를 써서 가져오면 교사, 학부모가 도움말을 작성하여 되돌려 줌
	잠시 마음 다스리기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 갖기	5분간 눈을 감고 몸가짐을 바로 한 상태를 유지함.
	다스리기	생각하는 의자 앉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줌
		만다라 색칠하기	만다라 도안을 주고 색칠하게 함.
		타임 아웃	교실 뒤로 나가서 서서 수업을 듣게 함.
	침묵수행	명언집 읽기	일정 시간동안 침묵하며 명언 집을 눈으로 반복하여 읽음.
		묵언 수행하기	법당 등 주어진 공간(교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일정시간 만큼 묵언 수행
		교사와 학생이 함께 걷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과 순례하기	친구(다툼이 있는 친구)나 교사(다섯분)을 찾아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기
	108배	잘못을 참회하며 법당에서 108배	
과제 중심 활동	암송하며 생각하기	문제행동의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시, 시조, 명언 등을 외워서 쓰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느낀점을 작성	
	서평 쓰기	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갈등 상황 등을 찾아 쓰거나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 지에 대해 작성	
	동영상 시청 후 감상문 쓰기	동영상의 줄거리와 느낌을 감상문으로 쓰고, 친구, 부모님,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돌아보는 글을 작성
	명심보감 쓰기	문제행동의 치유에 도움이 될만한 명심보감의 구절을 찾아 작성하여 외워 쓰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느낀 점을 작성
	자기주도 학습하기	지정된 장소에서 자기주도학습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실시한 결과물과 부모님의 의견을 적어오도록 함.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규칙이 없거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보고 다짐서를 작성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5가지를 적어보고,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대립되는 이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 작성
참여 중심 활동	교육활동 도우미	도우미 계획을 작성하고, 교사가 지정해 주는 교무업무, 생활지도 업무(등·하교지도, 함께 복도 순회하기, 화장실 순회하기)
	웰빙 도우미	교내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후 소감문을 작성 제출함(방법: 화장실 청소, 정수기 주변 청소 및 관리, 체육관 청소, 교실 청소 등)
	캠페인 활동	안전지킴이, 학교폭력예방, 언어문화 개선, 핸드폰 제출, 수업시간 예절, 생활태도 및 복장 등에 관한 캠페인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다.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장난치는 학생, 언어 및 신체 폭력을 하는 학생 등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동 또는 위험한 행동이나 장소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홍보한 후 느낀 점을 작성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지역사회를 위해 등·하교시 교통질서 지도, 학교주변 쓰레기 줍기 등에 관한 활동 계획서를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활동 후 소감문을 작성 제출
상담 중심 활동	상담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교감)면담,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
	Wee 센터 활용하기	전문상담교사와 상의하여 심리검사, 상담치료 등을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서 실시하는 상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한 후 확인증을 제출
	부모님 일터 체험하기	부모님의 일터를 찾아 업무를 도와드리며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느낀 점을 써서 제출
	사제동행하기	학부모과 학생, 선생님이 함께 영화감상, 등산, 외식하기 등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짐

③ 교육적 선도 조치 단계(학생생활안전부)

구분	방법
교내봉사	- 방과후 행정실 및 기타교사의 협조를 받아 교내봉사 실시 - 미 이행시 상위 징계 부여
사회봉사	- 방과 후 및 주말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실시 후 결과물을 학생생활안전부로 제출(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시일까지 미 이행시 상위 징계 부여

제6장 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116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경기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117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학 및 취업 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118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에 힘쓴다.

제118조 (무단 외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단 외출 학생으로 간주하며, 제5장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지도한다.

- ① 외출증을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적발된 경우
- ② 정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외출하여 적발된 경우

제119조 (출결상황)

- ① 직각은 1교시에만 적용하며, 학생 부재시 교과 담당교사가 지각처리 한다.
- ② 결과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타종 후 10분) 이후에 수업에 참여하면 결과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조퇴는 학생이 개인 사정이 있어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가 처리한다.
- ④ 외출 시에는 담임과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외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 ⑤ 보건실과 상담실을 입실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보건 교사와 상담교사의 허락을 받고 입실증을 수령하여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제120조 (전·편입학) 전·편입학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편입학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적담당교사가 맡는다. 위원은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육평가부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21조 (퇴학처분)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썩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무단결석에 따른 선도 조치)
 - 5일 이상 ~ 11일 미만: 1차 출석촉구서 발송(3일간 전문상담교사와 집중상담 및 자아성찰문작성)
 - 11일 이상 ~ 16일 미만: 2차 출석촉구서 발송(5일간 전문상담교사와 집중상담 및 자아성찰문작성)
 - 16일: 학부모 소환 상담
 - 16일 이상 ~ 21일 미만: 5일간 학부모 동반 전문상담교사와 집중상담 및 자아성찰문작성
 - 21일 이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후 퇴학 조치할 수 있음
 - 불연속 무단결석이 30일 이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후 퇴학 조치할 수 있음.

제2절 포상

제122조 (절차)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추천서를 받아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23조 (종류)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 ① 학력 부문 - 학업우수상
- ② 모범 부문 - 공로상(공로부문, 봉사부문, 효행부문, 예능부문, 기능부문, 체육부문, 모범부문)
- ③ 근면 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 ④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124조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로 정한다.

제125조 (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상신한다.

제126조 (학력 부문)

- ① 학업우수상 : 전 교과 성적에 상관없이 특정 과목 성적이 계열 1등 일 때에는 학업 우수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127조 (모범 부문) 개인 및 학급 표창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개인 표창 및 선발 기준 - 당해 연도에 '정화단계' 이상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에 한하여 표창한다.
- ㉠ 공로상
 - ㉠ 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
 - ㉡ 봉사부문: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 및 교내외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학생
 - ㉢ 효행부문: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모범이 되는 학생
 - ㉣ 모범부문: 교칙을 잘 준수하는 용모 단정한 학생으로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
 - ㉤ 예능부문: ○음악, 미술, 무용, 국악 부문 등 예술 감각이 뛰어나 각종 예능 발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시, 군 이상 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입상한 개인, 단체)
○문학 부문에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각종 대회에 입상한 학생 (시, 군 이상 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입상한 개인, 단체)
 - ㉥ 기능부문: ○시 대회이상 컴퓨터 경진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교내 기능 검정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기타 교내에서 컴퓨터 및 각종 기능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시 이상 과학 경시 대회, 전국과학전시, 전국과학발명대회, 발명품 전시회, 모형 항공기 대회 등 기능과 관련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컴퓨터 관련 자격증 5종목 이상 취득한 학생(취득 자격증 분야별 중복 금지)
 - ㉦ 체육부문: ○전국대회 규모에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시 대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대회로 1위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학교 체육 발전 및 체육활동에 공이 있는지

② 모범학급 및 모범학생 선발 기준

- ㉠ 무결석 및 출결 우수 학급
- ㉡ 교칙 및 생활규정 준수 우수 학급
- ㉢ 기타

제128조 (근면 부문)

-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129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130조 (위원회 조직): 학생의 생활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내에 아래의 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위원장: 교감
 - 위원: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법사, 교무부장, 총 학과부장, 상담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등
- ②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4조에 근거)
 - 위원장: 교감
 - 위원: 학생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3명, 학교폭력담당교사

제13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위원장이 선도 및 인권, 복지 증진 및 선도규정 개정 등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 처리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학교 내외를 수시 순회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기별 1회의 정기적 협의회를 열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 체벌 추방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 ㉢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 ㉣ 각 지도 위원이 제의하는 사항

제132조 (학교폭력대책자치기구 기능)

- ① 학교폭력대책자치기구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년 4회 이상의 정기적 협의회를 열고 학교 내외 폭력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기구는 학교 내외를 수시 순회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한다.

제133조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회 기능)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회는 학생의 생활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 및 협의하여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
 - ㉢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총칙

제134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5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36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37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38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139조(구성)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0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1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42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하여야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3조(간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145조(징계의 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⑤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제146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제공할 수 있다.
- ㉢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⑤ 퇴학

- ㉠ 퇴학조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한 자
-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7조(퇴학처분 전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8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선도기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종 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 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	○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7	교사의 지도에 불응 및 불손하게 행동한 학생			○	○	○	
	8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9	수업 준비, 청소, 기타 학생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10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혼방된 학생	○	○	○	○		
	12	경찰서에 연행 구속 석방된 학생	○	○	○	○		
	13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5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1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17	교내·외에서 타인의 물건을 훼손 및 훔친 학생	○	○	○			
	수업	18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1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20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22	시험을 거부한 학생				○	
23		시험 문제를 절취한 학생				○		
근태	24	무단결과, 무단 조퇴를 하는 학생		○				
	25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총20회)	○	○	○	○		
	26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27	법정수업일수를 미달한 학생					○	
흡연 및 약물	28	재학 기간(3년) 누적 5차 이하, 6차 이상(퇴학)		○		○	○	
				현장적발 시 과태료 4만원 부과				
	29	유해업소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여 적발 된 학생		○				
	30	유해업소나 기타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2회)		○	○	○		
폭력	3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32	타인을 구타하거나 흥기를 소지한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기구					
	33	흥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34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하는 학생						
	35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3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퇴폐 행위	37	도박을 한 학생(화투, 카드, 동전 먹기)	○	○				
	38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3회)		○	○			
	3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40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			
	41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42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금품	43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44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 절취, 사취한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기구					
45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단 행위	46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4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기타	48	동일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9	징계기준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2019학년도 경기도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가. 평가의 목표 및 방침- 9)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 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 에 포함하여야 함
제149조 (교권침해에 관한 특별규정)

- ① 교권침해라 함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라고 의결된 경우를 말하며 2항 적용 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 ② 적용 규정

행위유형	판 단 기 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조롱 거부	고의적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	○	○	○	○	
	학생이 선생님 지시에 따르지 않음	○	○	○	○	

	학생이 선생님 뒤에서 발길질이나 주먹질하는 시늉을 함	○	○	○	○	
언어폭력	선생님 앞에서 심한 욕설		○	○	○	○
위협	선생님이 맞지는 않았으나 학생이 주먹을 선생님에게 휘두름		○	○	○	○
	도구로 때리려고 함		○	○	○	○
성희롱	선생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함		○	○	○	○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냄		○	○	○	○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성추행에 속하는 경우)		○	○	○	○
사이버폭력	사이버 상에 선생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함		○	○	○	○
	사이버상으로 선생님에 대해 욕설을 함		○	○	○	○
	교사안티카페를 만들거나 가입함		○	○	○	○
신체폭력	선생님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 일부분이 맞았을 때		○	○	○	○
	학생이 신체를 이용하여 선생님을 밀거나 때렸을 때		○	○	○	○
	먹살 및 목을 잡았을 때		○	○	○	○
	머리채를 잡았을 때		○	○	○	○

제150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1조 (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2조(재심의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제151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4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3조(재심청구)

- ① 학교의 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154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5조(심의절차 및 조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개회
 - ㉡ 심의과정 설명
 -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156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의 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의 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8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절 규정의 개정

제159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8장 학생의 참정권 보장

제160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①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제16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6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64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

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5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 위원회 재직위원의 과반수
 -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6조 (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

- ①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7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6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6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7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71조 (개정 절차)

- ① 제정·개정안 발의
- ② 민주적 의견수렴 (위원회가 주관하여 학생·교원·학부모로부터 의견 수렴)
- ③ 교원·학생·학부모 토론회 및 공청회 (가급적 학생·교원·학부모 대표가 동수자로 참여)
- ④ 위원회의 규정 조정회의 및 합의

-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⑥ 교육감 인가
- ⑦ 공포 및 정보공시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안내)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위원이 참여한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개정된 내용으로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년 11월 25일 일부 개정

개정 2020년 02월 24일 일부 개정

개정 2021년 08월 13일 일부 개정

제2조 본 규정은 2021년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록: 학교생활 · 인권규정 서식]

[서식 1]

자기변론서(학생)

※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 __월 __일 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_____) 학교 밖(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_____) ② 다른 반 친구(_____) ③ 기 타(_____)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2]

사실 확인서 (교사)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 __월 __일 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_____) 학교 밖(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작성 교사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서식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청담고등학교장

의견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서식 7]

후보자 등록 신청서

20 학년도 학생회장 ·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신청합니다.

학년 반
성 명 :

<활동 계획>

※ 활동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시오.

<선거 공약>

- 1.
- 2.
- 3.
- 4.
- 5.

※ 선거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시오.

20 년 월 일

청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 8]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학년 반

성 명 :

본인은 금 번 선거에 ()으로 출마함에 있어, 학생의 본분과 학생회장단 선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제반 서류를 갖추어 20 ()학년도 청담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으로 출마하고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입후보자 추천서(담임교사) 1부.
2. 선거인단 추천인 명부(교사 1명, 학생 10명) 1부.
3. 선거운동원 등록서 1부. 끝.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학부모 동의 확인 : (인)

청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 9]

입후보자 추천서

추천서

()학년 ()반 ()학생을 아래와 같이 20 학년도 청담고등학교 학생회(정·부)회장으로 추천합니다.(2인이상 복수 추천 불가)

<교사 추천>

구분	학년 / 교과	성명	서명
1			
2			

<학생 추천>

구분	학년 / 반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청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서식 11]

선거운동원 등록서

아래 서명한 본인은 20 학년도 청담고등학교 학생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한
()(을)를 적극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으로 학생
본분에 어긋나지 않고 제반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거 운
동원 등록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학년	반	성명 :	(인)
학년	반	성명 :	(인)
학년	반	성명 :	(인)
학년	반	성명 :	(인)
학년	반	성명 :	(인)
학년	반	성명 :	(인)

20 년 월 일

청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회장선거용 벽보>

회 장 입 후 보 자

기 호
1

학년	반
성	명
사진	

자 기 소 개	
------------------	--

공 약 사 항	
------------------	--

*** 이 벽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 없이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떼지 못함**

선거운동원 신고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한 () (을)를 적극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함께 있어서 선거 운동원으로 학생 본분에 어긋나지 않고 제반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거 운동원 등록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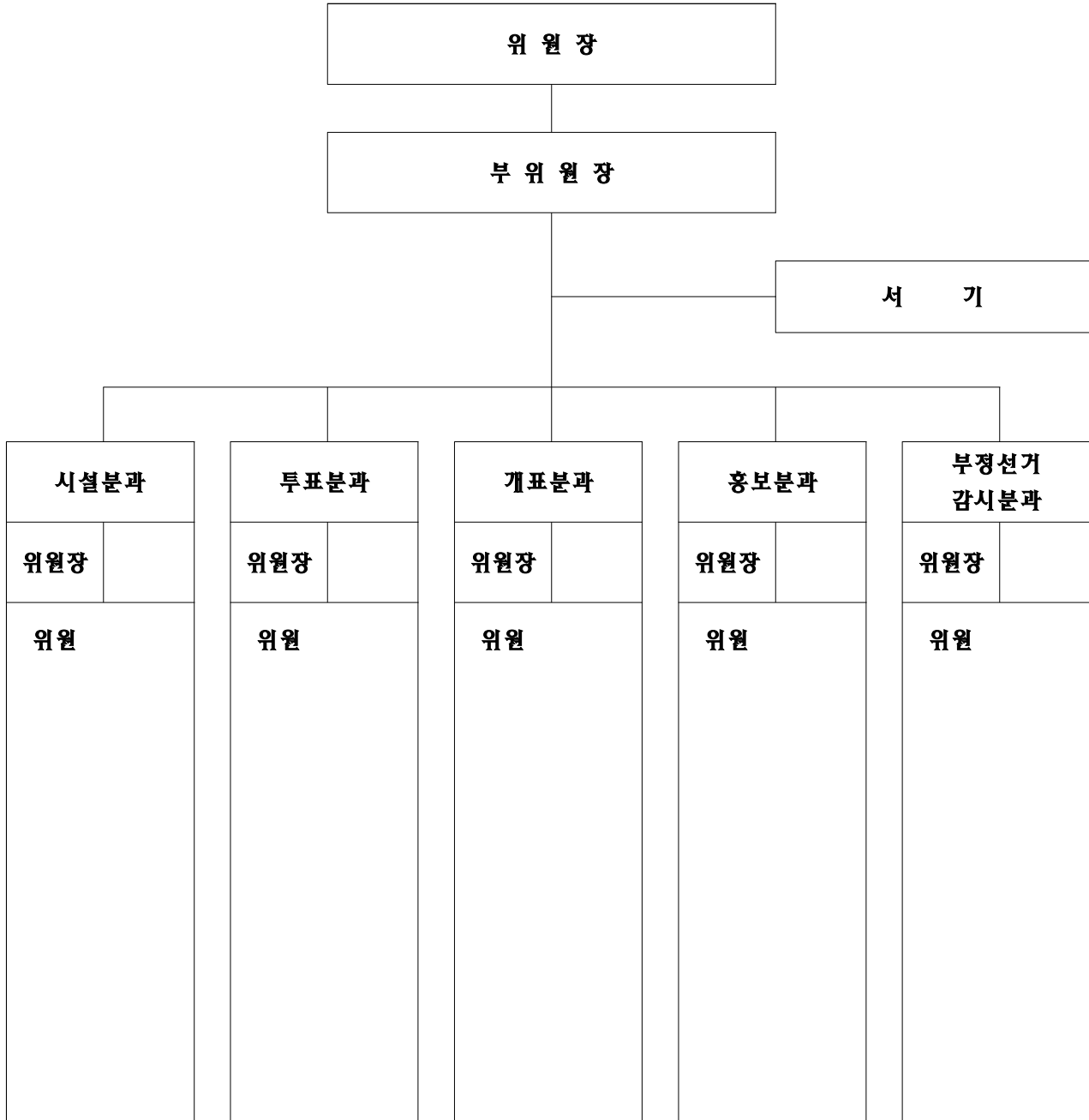
구 분	학 년	반	성 명	비고(선거운동원명찰발급번호)
선거 운동원				
참조 연설자				

20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인)

청담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관리 위원회 조직표



[서식 15]

관찰카드							사안	체크(V)							
지도 월일	()월 ()일						1.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 ()반 ()번 성명 : (서명) 								2. 용의 복장 규정 위반						
관찰카드 지급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3. 교사의 지도에 불응 및 불손한 태도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가능)								
							4. 휴대폰 소지 및 사용								
							5. 쓰레기 무단투기(껌, 칩 빨기)								
							6. 실내에서 소란행위(지나친 장난)								
							7. 소지품 규정 위반(담배 및 유해성 물질)								
							8. 실외화 미착용(슬리퍼 착용)								
지도교사 성명 : (서명)							9. 욕설 및 언어폭력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가능)								
							10. 신체 폭력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가능)								
							11. 흡연		흡연 1차(과태료 4만원)						
									흡연 2차(과태료 4만원)						
									흡연 3차(과태료 4만원)						
									흡연 4차(과태료 4만원)						
									흡연 5차(과태료 4만원)						
									흡연 6차		퇴학				
							12. 중대한 문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유해업소 출입, 음주, 학교명예훼손, 징계불응, 위조, 금품갈취, 부정행위)								

서 약 서

학과:

학번:

성명:

- 저는 자랑스러운 청담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역량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청담고등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과 학교 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급우들을 사랑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 저는 교내에서 항상 용모를 깨끗이 하고 교복을 단정히 착용하겠습니다.
- 저는 공공장소 및 교내에서 금연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등교와 동시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학교 일과 종료 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화재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학교의 교칙에 따라 어떠한 조치라도 달게 받을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2021. . .

서약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청담고등학교장 귀하

1 학생 인성 UP! 금연 UP! 프로그램 운영 목적

- 흡연 예방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금연의 생활화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력을 향상한다.
-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이미지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 적발과 체벌위주의 교육에서 선도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추구한다.

2 학생 인성 UP! 금연 UP! 프로그램의 필요성

- 요즘 학생들에게 있어 일방적 강요나 지시는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려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 흡연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 금연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 쾌적한 환경과 청결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3 학생 인성 UP! 금연 UP! 프로그램 운영 방침

-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매월 창의적체험활동(자율) 5교시 시간을 활용한다.
-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창의적체험활동(자율) 6교시 시간을 활용한다.
- 동영상은 방송부 지도교사(이동원선생님)와 담당학생이 상영한다.
- 운영시간은 10분 내외로 동영상 시청 후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청 소감을 발표하게 하고 반드시 훈화교육을 실시한다.
- 담임 선생님은 정시에 입실하여 정숙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 운영한다.
- 학기 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선생님 의견과 학생 소감을 반영하여 2학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4 학생 인성 UP! 금연 UP! 프로그램 세부 실천 계획

2021학년도 2학기 인성 UP! 금연 UP! 영상(8차시) 시청 계획

월	5교시	6교시
9월	교육 시리즈 - 친구	21세기 담배 표류기
10월	학교 밖 학교	간접흡연
11월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니코틴 중독
12월	이 구역 주인은 나야 나	금연구역

5 기대 효과

- 흡연 예방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쾌적한 학습 환경을 구성한다.
- 비 흡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력을 향상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인식 개선으로 학교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학교 사각 지역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 적발과 체벌 문화에서 계도와 예방으로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2021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계획서

청담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부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나를 지키고 /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은 짧은 시간,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의 길잡이를 의미함.

I 근 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II 목 적

- 학생·교직원, 학부모의 위기 상황별 안전교육 실천을 통한 안전생활 습관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정착화

III 운 영 내 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 운영방법
 - 학교 교육과정계획에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계획 수립
 - 학생 대상 교육은 매일 5분 상시 교육(주당 5회) 실시
 -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은연수 계획에 의거 실시
 - 나·침·반 안전교육 시간
 - 담임교사: 조례·종례시간, 관련 교과시간, 창체시간 등 활용
 - 그 외 교사: 관련 교과시간, 창체시간 등 활용

IV 세부 실천 계획

1. 2021학년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계획

2021학년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계획

구분	내용	일시	비고
학생	화재 및 테러 안전	매주 월요일 (08:55~09:00)	
	학교폭력예방(언어)	매주 화요일 (08:55~09:00)	
	실험·실습 및 체육시간 안전	매주 수요일 (08:55~09:00)	
	교통 및 물놀이 안전	매주 목요일 (08:55~09:00)	
	재난 안전(미세먼지, 지진, 풍수해, 대설한파)	매주 금요일 (08:55~09:00)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재난 안전	6월, 11월	
교사	학교폭력예방 재난 안전	6월, 11월	

2.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일지(예시)

연번	교육일	교육시간	안전영역	교육내용	학급 (학년-반)	교육자료	비고
1	2021-04-13	조례시간	재난	소화기 사용법	전체	나·침·반	예시
2							
3							
4							
5							
6							

3. 나·침·반 교육자료 제공

자료명	자료설명	자료 탑재 위치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5분 교육자료(한쇼, PPT) 278편 (유치원 48편, 초등 124편, 중등 106 편) ※ 3월 ~ 12월	K-에듀파인>업무관리>업무지원>알림판>일 반게시판>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가정연계 교육자료 ※ 3월 ~ 12월	
	나·침·반 안전송 (약보, MR, AR음원 등)	
안전교육 동영상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 시리즈 9편(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재안전편 https://youtu.be/Y6BvFIYYRo4 ② 테러안전편 https://youtu.be/dG9CdxM9_js ③ 학교폭력예방-언어편 https://youtu.be/RyfXSBm4DUY ④ 실험실습안전편 https://youtu.be/HznsS6O4hJ8 ⑤ 체육시간안전편 https://youtu.be/WaXRHe6Hioc ⑥ 교통안전-무단횡단편 https://youtu.be/dOdaLaL8dOs ⑦ 교통안전-스쿨존편 https://youtu.be/wGvgcVTutew ⑧ 재난안전-지진/해일편 https://youtu.be/k-k5daYvOwE
		K-에듀파인>업무관리>업무지원>알림판>일 반게시판>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경기학생참여 안전교육 동영상 5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세먼지 https://youtu.be/EYnE3HPPxAg ② 지진 https://youtu.be/_eJuKzEn6cM ③ 풍수해 https://youtu.be/AKILB7vNK90 ④ 화재 https://youtu.be/5vRGFeNmuPY ⑤ 대설한파 https://youtu.be/Q2r2ojKeXKo
	물놀이 안전 동영상 2편(애니메이션)	① 초등편

자료명	자료설명	자료 탑재 위치
		https://youtu.be/PEhqu5HH6Lc ② 중등편 https://youtu.be/Xi55FZG1oUM
	가스안전교육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K-에듀파인>업무관리>업무지원>알림판>일반게시판>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안전관련 각종 영상 수집 정리 (500여 편) ※ 영역별, 주제별, 급별 구분	
나.침.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체험, 토론, 실습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공문서 형식으로 제작	K-에듀파인>업무관리>업무지원>알림판>일반게시판>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V 기대 효과

- 안전예방 교육으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1 추진근거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경기교권보호 헌장」
- 「2021 경기교육기본계획」
- 「2021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2 추진 배경

- 교권침해 사례 증가로 교권실추 및 교원들의 사기저하
-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 증가
-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교권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필요

3 추진 목적

-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교권 확립을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 침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

4 추진 중점

-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스승존경, 제자사랑 풍토 조성
- 학교 차원의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
-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등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교사와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 문화 만들기에 노력함
- 사제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운동 전개
-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노력함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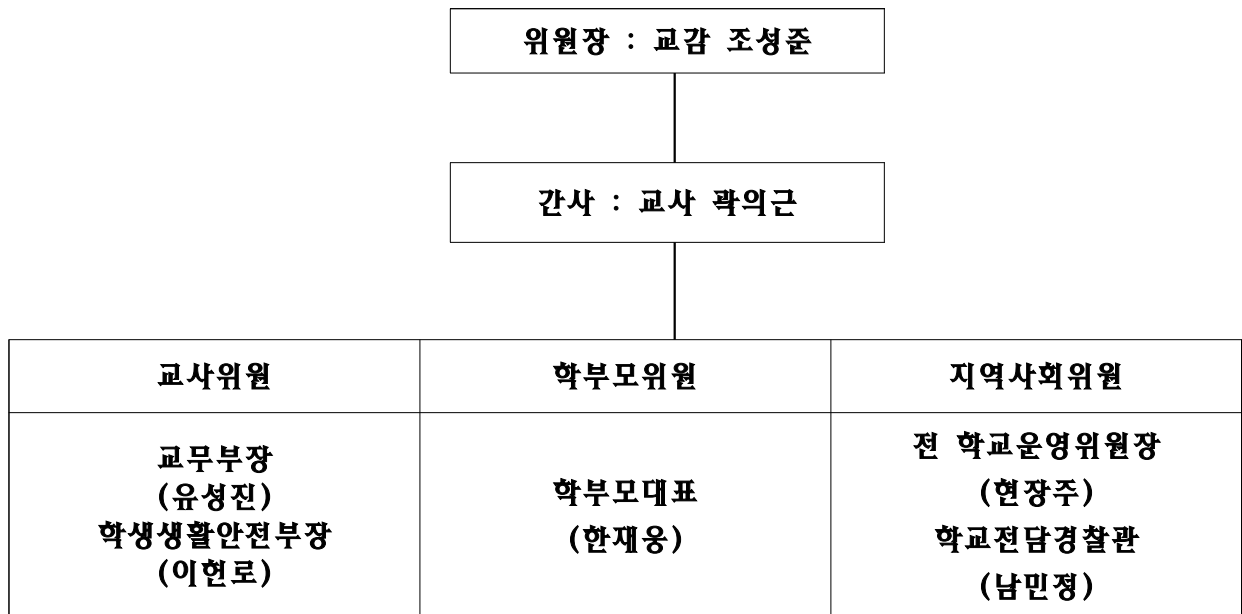
가)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나) 법적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기구

2) 구성 및 위원 선출

가) 위원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본교는 6명)

나) 위원 선출 :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다만,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3) 기능

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수립된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예방대책' 을 기준으로 선도 등의 다양한 조치 실시

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 이송

라)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처리 절차

단계	방법 및 절차	비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교원 → 교권보호업무 전담교사 ■ 선도처분요구서 제출 	선도처분요구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사안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사 및 교권침해학생의 진술기회 부여 (교사는 선도처분요구서, 학생은 사건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교권침해 사안의 교권침해 여부 결정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 여부 결정내용 학교장에게 보고 ■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 학교장 	학교장
↓		
교권침해사안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교권담당부서 (교수학습지원과 또는 초·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교권담당 부서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동시 보고 (경기도교육청 Fax : 249-0394) 	사안보고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Wee센터, 야영장)
↓		
교권침해 사안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사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생활교육위원회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규칙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처리절차

단계	방법 및 절차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사 : 보호 및 안전조치 ■ 교권침해 학부모 :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	
교권침해 사안조사 (관련자료 수집, 사실관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범죄)행위 제지 → 학교전담경찰관 ■ 교권침해(범죄)수사 개시 → 학교전담경찰관 ■ 관련자료 수집 : 시기, 내용 등의 사안 보고서 작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권침해사안 조정·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의 진술 기회부여 (피해교원은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중재조정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요청
↓	
고소·고발 및 소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피해 및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담당 도움 요청 ■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고소·고발 및 소송절차 지원)
↓	
해결확인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 사안 결과 처리 ■ 재발방지 대책 마련

5)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

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 기준

구분	항	내 용
폭언 모욕 명예 훼손	①	언어와 행동을 통한 교권침해의 경우
		1. 의도적이고,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2. 확산·전파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3. 2인 이상이 의도적으로 행하였는지 여부
		4. 상습/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5.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협박 폭행	②	교사를 협박한 경우
		1.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2. 공동/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③	직접적 폭력은 없었으나 언어·신체를 이용한 위협의 경우
	1. 위험한 도구 수반/공동/지속/상습여부	
	2. 특정기물(흥기 등)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극대화하였는지 여부	
협박 폭행	④	교사에 대한 직접폭행의 경우
		1. 폭력행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였는지 여부
		2. 위험한 도구 수반/공동/지속/상습여부
	⑤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 상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2. 2인 이상 공동/ 위험한 도구 수반 여부	
지도 불응	⑥	수업방해
		1.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경우
		2. 2인 이상이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3.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⑦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1. 지속·상습/고의성/집단 선동이 있었는지 여부	
	2. 지도불응으로 인하여 교내 질서 혼란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성침해	⑧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1. 통신망,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여부
		2.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촬영을 포함한 유포, 전파의 경우
	3. 상습/지속성 여부	

나. 학부모/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 기준

구분	항	내 용
폭언 모욕 명예훼손	①	교사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모욕 1. 언어·신체적 행동을 통한 모욕
	②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 통신수단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③	교사에 대한 무고 1. 고의/상습/지속성 여부
폭행 상해	④	교사에 대하여 위협을 가한 경우 1. 실제폭력은 없었지만, 신체·도구를 이용한 위협적 행동
	⑤	교사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경우 1. 언어·통신수단(SNS, 인터넷)을 통해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성/상습성 여부
	⑥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상습적으로 교사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2. 2인 이상이 가담하였는지 여부
	⑦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재물 손괴	⑧	재물손괴를 수반하여 교권침해를 한 경우 1. 학교공용 및 교사 개인 물품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였는지 여부
업무 방해	⑨	수업방해(교사의 수업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 1. 수업시간에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경우 2. 민원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교사 고유업무를 지연시키는지 여부
	⑩	정당한 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업 등 학교의 업무/직무를 방해하기에 이른 경우
성 침해	⑪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1. 통신망,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여부 2.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촬영을 포함한 유포, 전파의 경우 3. 상습/지속성 여부
조치 불응	⑫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과도한 보상액(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1. 교사에게 신분상의 위협으로 과도한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지 여부

다.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구분	항	내 용
언론 보도	①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한 언론유포행위
	②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한 경우 1. 교권침해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 여부

라.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의한다.

6) 교권침해 교원 지원 방안

구분	항	내 용
개인	①	즉각적 법적 보호조치
		1. 공무상 병가 및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 2. 법적 고소·고발 조치
	②	계속적 보호조치
		1. 비정기 전보 2. 질병휴직 조치
언론보도	③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
	④	기자에 대한 서면사과 권고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019.10.17.시행)에 의하여 「청담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근거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제3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 본교 학생의 학부모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교원 위원이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 운영)

-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교권보호 신청)

교권침해 사안에 관련된 교원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교권보호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 즉시 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 ㉡ 관련 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사실관계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개월치),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학생·학부모 면담 및 교육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요청

제16조(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 ①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 즉시 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 ㉡ 관련 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사실관계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개월치),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조정·중재활동: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중재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해 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 교원의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다.
 - ㉤ 제4호에 따른 조정·중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 고소·고발 및 소송: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및 소송 절차를 밟는다.
 - ㉦ 해결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적인 운영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교권침해 학생 선도 처분 요구서

발생일시	2021. . . . (시 분경)	요구일시	2017. . . .
대상 학생	학년 반	성명	
요구자	직	성명	

내용 및 의견

○ 내용 : 잘못된 행동에 대해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위 학생은 제시한 내용과 같이 본인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기에 학교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

요구자

(인)

응급환자 관리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청담고등학교 보건실

◆ 응급환자 발생시 처리지침 ◆

1. 목적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응급환자의 원활한 처치 및 후송으로 생명을 구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함.

2. 학교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뜻하며,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응급환자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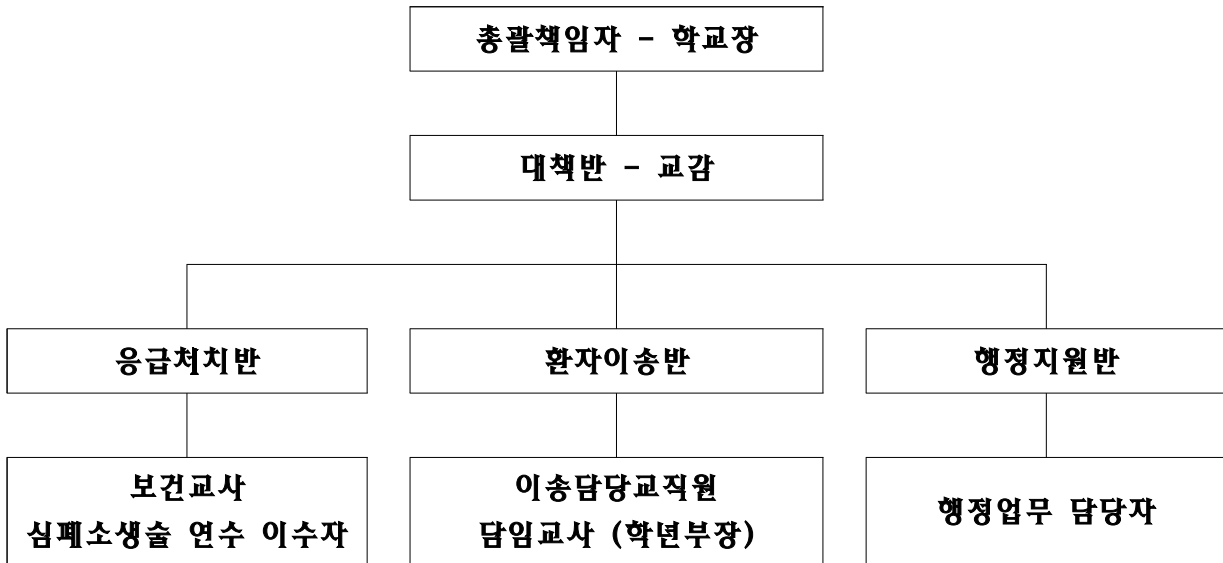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

1. 응급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성 대사 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⑦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⑧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⑨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에 준하는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③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 혈관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⑥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4. 응급환자 발생시 책임자 지정

- 총괄책임자 : 학교장
- 처치책임자 : 보건교사
- 후송책임자 : 담임교사

※ 응급상황 관리반 구성



※ 응급상황 관리반 역할

응급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또는 보건업무담당교사, 심폐소생술 연수 이수 교사 2인 이상 ◆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 담당
환자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따라 이송담당 교직원의 부재를 예상하여 2인 이상 • 담임교사(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가 응급환자이송에 동행하는 경우, 보건실 관리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 보건실 대체인력은 보건실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숙지 • 대책반장이 명함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 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5. 응급처치함 구비 : 본교무실

6. 보건교사 부재시 응급처치 담당인력 : 담임교사

7. 담임교사 부재시 응급처치 담당인력 : 학년부장

8.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응급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함.

-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사전 홍보
- 응급시 비상연락망 확보(학부모, 학부모 부재시 연락처)
- 학부모에게 연락 안될 시 학교 인근 병의원으로 후송 조치함을 명시 (병원 후송 시 환자후송 교직원 출장 처리)

◆ 응급환자 발생시 교직원 행동 지침 ◆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따라 현장사람들은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피해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의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최초 발견 교직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한다. 먼저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다음의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감전, 가스누출, 건물붕괴, 화재, 폭력사고, 안전사고로 인한 척추손상 우려 등)

2) 응급환자 발생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비의료인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응급상황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119 구급대에 곧바로 연락을 취한다.

3) 보건교사가 응급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현장에 있는 교직원이 반드시 계속해서 응급환자를 관찰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응급상황에서 물, 약물 등 경구(입)투여는 삼가한다.

5)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증의 부상이나 아픈 학생은 이동시키지 않는다.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꼭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목과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대로 지지 후 이동한다.

6) 보건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환자의 활력증상을 측정하고 환자를 사정(査定)한다.

7) 필요한 경우 119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한다.

8) 일반차량(승용차)으로 후송 시에는 운전자와 관찰자 등 최소 2명이상이 후송한다.

(보건교사 동행의 경우 환자 관찰, 처치를 위하여 보건교사는 운전하지 않는다)

9) 담임교사는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학교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한다.

10)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권한 대행자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한다.

11) 교직원은 학부모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학생의 상태를 관찰한다.

12)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을 보건일지 또는 별도의 응급환자 기록지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학교내 응급환자처리(업무분장 등) ◆

구분	환자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	환자 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경우	비고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도폐쇄, 호흡곤란(1분에30번 이하 시)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인 경우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부상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고열, 단순외상 등 	
절차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보건교사(담임교사)→교감 →교장보고 ■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후 119연락 또는 다른 이송 방법모색 (병원구급차량, 교직원차량 등) ■ 편안한 자세-기도유지 및 척추손상에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담임교사→학부모 연락 → 환자상태, 이송병원 주민번호파악, 보호자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토록 안내 (의료기관 선택은 학부모 의사에 따름)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함께 이송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보건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보건일지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인계 ■ 학부모가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송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차량, 119, 병원응급차량 (※교직원 차량인 경우 이송 시 이송도중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운전을 하지 않는다) 		
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와 연락이 되어 동행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지불하고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후불로 처리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 ■ 안전공제회 해당 시 담임교사는 교감, 교장선생님께 사전 보고 후 안전공제회에 신청 		
이송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후송 시 동행교직원(응급처치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장 처리 ■ 후송경비가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 학교예산에서 지출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부재 시 학교보건업무(보건실 등)는 지정된 학교보건업무대행자가 담당한다. ■ 응급을 요하는 경우 119에 연락한 후 종합병원으로 이송한다. ■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기록은 후송 즉시 기록하도록 한다.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사고 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자는 출장 교직원(특히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에 대해서는 교문을 떠남과 동시에 출장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이송도중 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1.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감염병
특징	물/식품매개, 유행 즉시 방역대책	예방접종대상	발생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신규발생, 해외유입 가능	기생충감염 (보건복지부령, 정기조사, 감시)	유행 여부 조사감시 (보건복지부령)
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독감)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등호흡기증후군 (MERS) 지카바이러스	희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의료관련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주기	즉시	즉시	즉시(예외:인플루엔자는 7일 이내)	즉시	7일 이내	7일 이내

2. 등교중지 및 출결처리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장은 교내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학생은 완치 후 등교 시 **진료확인서(혹은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 담임교사는 출석인정에 관한 사후결재를 받는다.
 - ※ 진료확인서에는 병명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 진료확인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간만 출석인정 됨
 - ※ 감염병이라 해도 학교장 승인 없이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3. 등교중지시 행정사항

- 담임교사 : 진료확인서 첨부해 출석인정 기안 상신
 - ※ 학생이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보건실에 꼭 알릴 것. (통계작성 및 나이스 교육청 보고)
- 출석부 표시 : 해당 학생 칸에 기간동안 " ← 등교중지 →"
비고란에 감염병명 표기 (예) 법정감염병 : 홍역

4. 감염병 관리 대책반 편성·운영

- 감염병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 감염병 발생 비상 대책 위원회 운영조직도



◆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황별 응급처치방법 ◆

1. 외상

- 이물질이 묻은 상처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만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멸균 거즈를 덮어 병원에 간다.
- 피가 계속 날 때는 새 거즈로 갈기보다 덧대고 상처부위를 꼭 누른 채 심장보다 높여준다.
- ※ **얼굴 상처** : 상처부위에 반창고를 붙여 햇빛을 가려주고, 되도록 성형외과로 보낸다.
- ※ **머리 상처** : 머리는 특히 출혈량이 많은 부위(외출혈보다 내출혈의 위험성 여부)
- ※ 물리거나 녹슨 못(칼)에 찔린 경우 : 파상풍 등 이차감염예방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함

※ 유리나 이물질이 깊이 박힌 경우 : 깊이 박힌 이물질을 빼면 대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2. 화상

- 화상 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흐르는 차가운 물로 **10-15분 정도 식혀주어야** 한다. (얼음x)
- 가벼운 화상이라면 화상연고나 항생제연고(후시딘 등)를 발라준다.
- **병원으로 이송 시** 피부를 충분히 식힌 다음, 물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채 간다.
(손상부위에 감자, 바셀린연고, 술 등 민간요법제를 바르면 병원에서 닦아내야 하므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팔찌나 시계, 반지, 귀걸이, 허리띠 등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제거하기도 어려우므로 **빨리 빼주어야** 한다.
- 화상부위에 옷이 들러붙었으면 강제로 떼어내지 않는다.

3. 이물질로 인한 "기도 질식"

- 뇌는 산소가 4분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을 입기 시작하여 6분이 경과하면 뇌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캐캐거림, 기침 등) 안심시키고 기침을 하여 스스로 뱉어내도록 한다.
-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숨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함) 학생의 등을 치거나 물을 먹이거나 걷게 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그 자리에서 하임리히요법(복부 압박법)을 실시해야 한다.

※ 하임리히법 순서 :

- ①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환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구조자의 한쪽 발을 넣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한다.
- ② 구조자는 주먹의 엄지면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싸 쥐는다.
- ③ 후상방으로 힘껏 쳐올린다.



4. 치아손상

- 흔들리거나 다쳐서 빠진 **유택**은 다시 심지 않는다.
- 빠진 치아나 조각을 찾아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담아 30분 이내에 치과로** 가지고 간다.
(이때, 치아의 뿌리 부분을 만지거나 문질러서 씻지 않도록 한다.)

5.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또는 안구 타박상

- 이물질,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수압이 낮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낸다.
- 타박상(축구/야구공, 싸움 등)의 경우 얼음찜질을 해 준다.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 안구 운동장애 및 통증, 눈꺼풀 부종, 눈 주위 멍자국, 얼굴감각이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 진료를 받는다.)

6. 경련성 질환

- 대부분의 간질 발작은 **3~5분 안에 저절로 멈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안정하도록 하여 쉬게 해준다.
- 환자의 몸이 경련 발작으로 인해 다치지 않게 주변의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를 치운다.
- 주변사람들의 긴장과 우려를 느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에 강직이 오기 때문에 **신체를 꼭 죄는 옷은 풀어준다.**
- 입안에 분비물 증가 또는 토할 경우 기도를 막아 질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입안의 내용물이 밖으로 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뇌 손상이 초래되는 경련 중첩 상태(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
- 상황 종료 후, 학급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파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경련 중인 아이를 품에 꼭 껴안거나 억지로 이동시키는 행위, 손발을 바늘로 따는 행위, 주무르기 등은 절대 하지 않는다.

I 운영 목적

-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심신의 성장을 도모하며 학생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학생들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운영 방침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기 진단 검사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검사결과를 상담에 활용하도록 한다.
- 상담활동은 학생들의 면담 요청에 의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와의 협조로 상담한다.
- 학생 생활태도 및 의식구조의 심층적 이해와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학교방문 및 서신 연락을 하여 가정과의 긴밀한 유대로 학생들을 상담한다.
- 전문 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

III 일반 현황

가. 학년별 학생 수 및 교원수(기준일 2021. 3. 1)

(단위: 명)

구분	총교원수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	1학년 학생수	2학년 학생수	3학년 학생수
인원수	51 (기간제교사 미포함)	1	0	207	250	255

나. 학생 특성: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열의는 높지 않은 편임.

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경기도 남부지역에 읍면단위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지역특성으로 인해 학업분위기 조성이 뛰어나지 않으며, 학교 인근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독특한 지역적 분위기가 있음.

라. 고위험군 학생의 특성: 한 학급에 평균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30~40%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의 따뜻한 양육 결여로 인해 우울 및 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나, 가정에서 이 학생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IV

일반 계획

가. 상담지원인력: (Wee클래스 담당)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기타 상담인력 (상담자원봉사자 등)
전문상담교사	박연서	010-9414-3900	0명

나.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 현황

※ 상담 주간 운영 등으로 파악한 수

- 인원수: 4

- 학생 특성: 우울감, 소심함, 대인관계기술부족으로 친밀한 친구관계형성이 어려워 학교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을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다. Wee Class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계획

관심군 (일반)	- 위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지원을 할 예정임.
관심군 (위험)	- 위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지원을 할 예정임.

라. 심리검사 운영 계획

관심군 (일반)	- 위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지원을 할 예정임.
관심군 (위험)	- 위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지원을 할 예정임.

- 2021.상반기중 - 1,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건강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검사결과지를 학생과 담임교사에게 전달할 예정임.

V

상담 프로그램

1. Wee Class 주요 추진 계획

추진영역	추진내용	추진일시	협조부서
학생 이해 자료의 확충	○ 담임교사를 통한 상담필요 학생 조사	수시	전학년부
	○ 표준화 심리검사의 실시와 활용	1회	1,2학년
상담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 조성	○ Wee Class 환경 조성 및 운영	수시	
	○ 상담관련 양식구비	수시	
	○ 연간 상담 운영계획 수립	1회(3월)	
	○ Wee Class 안내 게시물 각반 배부	2회(3,9월)	
개인 상담	○ 상담희망학생 및 상담의뢰 학생 상담	수시	전학년부
	○ 자퇴 희망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수시	전학년부
	○ 상담의뢰 학생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수시	전학년부
집단 상담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2회 (1,2학기)	학생생활인권부 1,2학년부
	○ 인성중심 집단상담	수시	1,2학년부
기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상담 지원	1학기	1학년부
	○ 외부기관연계 상담활동	수시	

VI

상담 프로그램

- 가. 관심군(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생명존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임.
- 나. 본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는 감정코칭 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VII

월별 활동 및 소요 예산

가. 예산집행 계획

- 자체 예산으로 Wee 클래스 예산만을 대상으로 작성

일시	활동내용	지출내역	소요액(원)	담당자
2021.7~2021.12	- 마음치유 프로그램	-체험비 -강사비	400,000	박연서
2021.7~2021.12	- 교사 대상 감정코칭 연수	-강사비 -간식비	400,000	박연서
2021.5~2021.12	- 상담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소모품비	200,000	박연서
계			1,000,000	

나. 예산집행 계획(학교 자체 예산)

일시	활동내용	지출내역	소요액(원)	담당자
2021.상반기 중	- 1,2학년 표준화 심리검사	검사지 2,500*530명	1,320,000	박연서
2021.12	- 마음치유 프로그램	체험비	400,000	박연서
계			1,720,000	